

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

제 정 : 1977. 1.15

최종개정 : 2000. 6. 9

개 정 : 2014. 6. 19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회계학회에서 발간하는 「회계학연구」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)

- ① 편집위원회는 「회계학연구」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- ② 편집위원회는 「회계학연구」의 편집방침, 투고규정,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제4조(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)

- ①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는 한국회계학회장, 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, 차기한국회계학회장과 차기한국회계학회장이 지명한 2명, 함께 5명으로 구성하며, 차기한국회계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②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7일 이전에 선정위원장이 소집하여 차기 편집위원장을 선출한다.

제5조(편집위원장)

-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,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회계학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한국회계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으로 2명(공동편집위원장)을 임명할 수 있다.
 1.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 2. 한국회계학회 회원으로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 3. 최근 10년 내에 「회계학연구」 및 이에 준하는 1급 국내학술지에 10편(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)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.
- ② 위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.
 1.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1급 국내학술지 2편의 논문발표로 환산한다. 다만, The Accounting Review,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,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,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및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등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는 1급 국내학술지 3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.

2. SSCI에 미등재된 국제학술지와 타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환산율은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③ 제2항에서 「회계학연구」에 준하는 1급 국내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한다.
- ④ 제2항의 적용에 있어 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.

제6조(편집위원)

-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.
 1.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 2. 최근 5년 이내에 「회계학연구」 및 이에 준하는 1급 국내학술지에 5편(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)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, 국제학술지 및 타 분야 학술지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편집위원은 회계학의 각 분야(재무회계, 관리회계, 회계감사, 세무회계, 회계정보시스템 등)에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한다.
- ③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한국회계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편집위원은 서울, 경기/인천, 강원, 충청/대전, 부산/울산/경남, 대구/경북, 전라/광주, 제주, 미주, 미주외 외국 지역의 10개 지역 중 최소 5개 지역 이상으로부터 편집위원을 구성한다. 단, 미주 및 미주외 외국 지역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.

제7조(심사의 공정성 확보)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.
- ② 심사위원 간의 심사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게재 및 재심사여부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.
- ③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,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규정을 정한다.
- ④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「회계학연구」에 투고할 수 없다. 편집위원장의 인수인계시 신임편집위원장 내정자의 투고논문은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완료한다.

제8조(임기)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편집위원은 매년 반수가 교체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한다.

제9조(회의)

- ① 편집위원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② 편집위원회에서 「회계학연구」에 게재될 논문을 최종 확정한다. 「회계학연구」는 매년 6회(2, 4, 6, 8, 10, 12월의 말일) 발행한다.
- ③ 편집위원회 회의내용에 관해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결) 편집위원회의 개최 시에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

제11조(예산)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.

제12조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회계학회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칙(2014. 6. 19 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8조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편집위원 2분의 1의 임기는 1년, 나머지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